
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자료집

2025. 3. 19.(수)

군산산북초등학교

2025 학교 현황

1. 연혁

연 월 일	개 요
1991. 06. 10.	군산산북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3. 09. 01.	군산소룡초등학교에서 분리 개교 (11학급 467명) / 제1대 고헌석 교장
2005. 03. 01.	독서교육 시범학교(전라북도교육청 지정)
2005. 04. 06.	다목적 체육관 개관
2005. 09. 09.	디지털 도서관 개관
2008. 03. 02.	교육복지 중점학교 지정(~현재)
2015. 03. 02.	원도심학교 운영(~현재)
2016. 03. 02.	쌀 중심 식습관 교육학교 운영(~2017)
2017. 03. 02.	전국 우유 급식 우수학교 선정
2022. 01. 03.	제27회 101명 졸업(총 졸업생수 3,697명)
2022. 12. 30.	제28회 98명 졸업(총 졸업생수 3,795명)
2023. 01. 05.	본관 창호 공사 (소요예산 10억)
2023. 03. 01.	제14대 최갑용 교장 부임
2024. 03. 02.~	등나무 조성 / 강당 외벽 / 도서실, 보건실 현대화 사업
2025. 03. 01.	총 18학급 편성(특수 2학급 포함)

2. 학생 현황

(2025.03.04.기준)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학급	계	
학급수	2	3	2	3	3	3	2	18	
학 생 수	남	17	25	22	37	35	32	(10)	168
	여	10	22	18	25	32	38	(3)	145
	계	27	47	40	62	67	70	(13)	313

3. 교직원 현황

성별	구분	교원									일반 행정직		교육 공무원								시설관리직	경비원	공익근무요원	계	총계		
		교장	교감	늘봄지원실장	수석교사	부장교사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계	행정실장	주무관	교무실무사	교육복지사	영회전문사	어화문사	특교지도사	수행실무사	늘봄전담사						조리종사원	청소원
남		1	·	·	·	2	4	·	·	·	7	·	1	·	·	·	·	·	·	·	·	·	1	1	1	4	11
여		·	1	1	1	4	9	2	1	1	20	1	1	1	1	1	1	1	2	5	1	·	·	·	15	35	
계		1	1	1	1	6	13	2	1	1	27	1	2	1	1	1	1	1	2	5	1	1	1	1	19	46	

4. 시설현황

구분	교지면적		관리실							정유교실	특별실															
	학교터 (㎡)	운동장 (㎡)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숙직실	보건실	등사실	강당		도서관	영어체험실	과학실	수업나눔실	통합교육실	기초학습실	컴퓨터실	학준물	습비실	wee class	유아유원실	교사연구실	교직원휴게실	문서고	돌봄교실	별빛놀이실
수량	1,421㎡	21,865㎡	0.5	2	1.5	0.5	1	0.5	16	1	1	1	2	1	2	1	1	1	1	1	1	1	0.5	2	1	7

※ 최근 3년간 운동장 공사, 통학로 계단 공사, 별빛관 화장실 공사, 계단 내외부 논슬립 공사, 본관 창호공사가 있었으며, 강당 후로링 작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3학년도 돌봄예산지원 신청을 받아 꿈놀이터, 및 창의나래실 리모델링
- 2024학년도 보건실 현대화, 과학실 현대화, 3~6학년 12개 학급 스마트 교실 구축
- 2025학년도 1~2학년 5개 학급 스마트 교실 구축 예정
여름방학 중 각 반 교실 페인트 작업 예정
- 도서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각 층 빈 교실에 카페형 도서관 설치 또는 미래교실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학부모 연수 자료

1. 군산산북교육과정 안내

■ 군산산북 교육목표 및 교육중점	1
■ 2025학년도 학사일정	2
■ 2022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3
■ 과정중심평가	4
■ 원도심학교	5
■ 교육복지 중점학교	6
■ 늘봄학교	7

2. 학부모 연수

① 학교폭력 예방	9
② 아동학대 예방	11
③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14
④ 청소년 도박 예방	16
⑤ 약물 중독 및 흡연 예방	17
⑥ 디지털 성폭력 예방	19
⑦ 양성평등교육	21
⑧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22
⑨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 근절	24
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26
⑪ 학생 안전교육	29
⑫ 장애이해교육	30
⑬ 출결 규정	32
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34



군산산복교육목표 및 교육중점

비
전

꿈을 함께 키워가는 행복한 산복 교육공동체

목
표
내
容

지성인	서로 돕고 배우며 실력을 쌓는 어린이
인성인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건강인	튼튼한 몸으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어린이
창의인	개성을 살려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감성인	풍부한 감성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 어린이

지성인	인성인	건강인	창의인	감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교육 활성화 기초학력 책임교육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성장평가제 운영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생활교육 폭력 없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특수교육 교육복지 중점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교육 안전교육 학교체육 내실화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방과후학교 활성화 창의과학 교육 미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원도심학교 운영 역사교육

주
요
성
과

탄탄한 기초실력! 기초학력 책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맞춤형 책임 교육 실현 북(Book)적 북(Book)적 산빛행복도서관 운영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다채로운 교사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육 전문성 신장 빛깔있는 학년교육과정 운영



2025학년도 학사일정

2025.3							4							5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29	27	28	29	30	25	26	27	28	29	30	31	29	30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토) 삼일절 3.3(월) 대체공휴일 3.4(화) 입학식, 시업식 3.10(월)~14(금) 진단평가주간 3.12(수) 1학기 학급임원선거 3.17(월)~21(금) 친구사랑주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3.19(수) 교육과정 설명회 3.20(목) 전교자치회 임원선거 3.27(목)~4.1(화) 3,4학년 수상 안전교육 3.31(월)~4.4(금) 교통안전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7(월)~11(금) 학부모상담주간 4.14(월)~18(금) 인성교육주간 4.16(수) 1학기 현장체험학습 4.21(월) 과학의 날 4.21(월) 소변검사(2,3,5,6학년) 4.21(월)~25(금) 1학기 독서행사주간 4.22(화) 장애이해교육 4.28(월)~5.2(금) 신체발달상황 검사(2,3,5,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목) 재량휴업일 5.5(월)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5.6(화) 대체휴일 5.19(월)~23(금) 생명존중교육주간 5.22(목) 구강검사(2,6학년) 5.26(월)~30(금) 흡연,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주간 5.29(목) 구강검사(3,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화) 학부모대상 수업공개 6.6(금) 현충일 6.23(월)~27(금) 문화다양성교육주간 																							
7							8							9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2							1	2	3	4							1	2	3	4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24/ 31	25	26	27	28	29	30	28	29	30	26	27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7.7(월)~11(금) 나의 꿈 발표주간 7.21(월) 1학기 과정중심평가 통지일 7.22(화) 여름방학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5(금) 광복절 8.20(수) 여름방학 개학식 8.27(수) 2학기 학급임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월) 개교기념일 9.8(월)~12(금) 친구사랑주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9.9(화) 진로직업체험(4학년) 9.10(수) 진로직업체험(5학년) 9.11(목) 진로직업체험(6학년) 9.24(수) 2,5학년 생애주기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3(금) 개천절 10.6(월)~7(화) 추석 연휴 10.8(수) 대체휴일 10.9(목) 한글날 10.10(금) 재량휴업일 10.13(월)~17(금) 독도교육주간 10.15(수) 현장체험학습(1~5학년) 10.15(수)~16(목) 테마식현장체험학습(6학년) 10.20(월)~24(금) 인성교육실천주간 10.21(화) 장애이해교육 10.23(목) 산울림한마당(저학년) 10.24(금) 산울림한마당(고학년) 10.27(월)~31(금) 재난대응교육주간 10.27(월) 원도심문화예술체험 																							
11							12							2026. 1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2	3												1	2	3													1	2	3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15	16	17	18	19	20	21																	
23/ 30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31	22	23	24	25	26	2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3(월)~5(수) 5학년 영어체험센터 입소 11.5(수) 교직원 심폐소생술교육 11.17(월)~21(금) 2학기 독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월)~5(금) 평화통일교육주간 12.25(목) 성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목) 신청 1.7(수) 2학기 과정중심평가 통지일 1.8(목) 종업식·졸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6(월) 설연휴 2.17(화) 설날 2.18(수) 설연휴 																							



2022 개정 교육과정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선
-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책임교육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
- 디지털·AI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

1. 인간상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2.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3.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자신의 학습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언어·수리력, 디지털·인공 지능 기초 소양 함양 협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초등학교)

1.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개선	2. 안전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초기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습 토대 마련 및 심리·정서적 도움 제공(1학년)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 시수 확대(3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생활’ 내용을 통합교과로 재구조화(64시간) ※ 바른생활(16시간), 슬기로운 생활(34시간), 즐거운 생활(16시간) 교과와 연계한 생활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운영
3. 신체활동 강화	4. 진로연계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즐거운 생활 교과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에 반영(14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 학년으로 전학하기 전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한 교육(전학년) 자유학기 프로그램 맛보기, 중학교 생활 이해 교육(6학년) 교과별 진로교육 강화
5. ‘학교자율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계 및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 운영(3~6학년 해당)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교과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 개설 가능 	

2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과정중심 평가

1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 학기말, 학년말에 시행되는 평가 (등수, 성적표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 종합적 평가
- 결과중심 평가
- 교사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 교수·학습 중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평가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
- 진단적, 형성적 평가
- 과정 및 결과 평가
- 교사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2 다양한 학생평가의 방법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평가 방법

평가의 기능(시기)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

평가의 방법

서술형, 논술형

관찰형, 구술형

토론/토의, 실험/실습형

선택형, 완성형 등

평가의 주체

자기평가

상호평가

교사평가 등

3 학생평가 질의·응답

Q. 초등학교에서 학생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초등학교에서는 결과 중심의 일제형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습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의 성장을 적기에 지원하는 결과와 과정을 함께 중시하는 과정중심 학생평가(진단, 형성, 총괄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학교는 학년초(학기초)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합니다. 평가 일정, 성적 처리 방법, 통보 횟수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원도심 학교

1 2025학년도 원도심학교 운영 중점사항

-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과정 지원
- 교육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꿈과 상상력이 자라나는 문화/진로 체험

2 2025학년도 원도심학교 세부 운영사업

- 교과지식과 삶을 연결하기 위한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 및 학급별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 삶을 다채롭게 하는 학급별 동아리 활동 지원
- 다양한 분야의 학부모 대상 연수, 체험 실시
-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교육 실시
-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 제공(오케스트라 등)
- 학생의 소질 계발 및 진로인식 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3 세부 추진 계획

가. 교육과정 운영

- 1)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
 -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특성에 맞는 연간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실시
- 2) 학급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학급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교사의 창의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학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3) 동아리활동 지원
 - 다양한 학급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잠재력과 감수성을 기르고, 다채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원도심학교 유형별 강화 프로그램

- 1) 즐겁게 배우는 산북 어린이
 - 문화, 예술, 진로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기회 제공
- 2) 함께 성장하는 산북 어린이
 - 산울림 한마당 단체경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함양

다. 학부모 교육

- 자녀와의 소통, 공감, 감정, 올바른 식단 등 다양한 분야의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 학부모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라. 기타

- 원도심학교 운영에 대한 홍보
- 교사 협의회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마. 기대효과

- 1)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배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과 배움과 삶을 연결
- 2) 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로 교육에 대한 신뢰 향상 및 관심 제고



교육복지 중점학교

1 교육복지우선지원 안내

- 목적 : 교육취약 학생들이 직면한 교육기회·교육과정·교육 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학교와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

2 포괄적 대상 - 학교 전체 학생

- 교과연계 프로젝트
 - 1,2학년 : 뉴스포츠(소-대근육) 체육활동(10회), 강점 찾기&자기계발 프로그램 활동(6회)
 - 3,4학년 : 난타 수업(5회), 보드게임&놀이 활동 프로그램(3회)
 - 5,6학년 : 연극 수업(5회), 건강한 식생활 교육(5회)
- 위기학급 지원
- 산마루 프로젝트: 연 3회 예정 (어린이날, 친구사랑 주간, 애플데이)
미소마을 행복네트워크 교육공동체-제15회 “미소마을 주민어울한마당” 지역축제 운영 10월 예정)

3 집중·우선지원 학생 → 법정 저소득, 담임 추천

- 사례 관리(통합지원)
 - 개인·가족 상담 지원
 - 사례 멘토링
 - 학교생활 지원(생활안전 긴급 지원, 건강 지원)
- 맞춤형 지원
 - 가정-학생-지역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을 맞춤형 지원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함
- 가족 기능 강화 - “소원을 말해봐” 가족 프로젝트, 자기관리, 길 위의 학교, 자율 동아리(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하여 운영함), 방학 아카데미 등

4 교육복지실 운영

- 운영 시간: 월~금요일 8:30 - 16:30
- 센터 운영: 월~금요일 점심시간 (12:30-13:00), 보드게임(복지쌈을 이겨라!!!)
월(1~2학년), 화(3~4학년), 목(5학년), 금요일(6학년)
- 위치: 2층 산마루실 (문의: 교육복지사 김정희 ☎ 063-465-2331)



늘봄학교

1 늘봄학교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늘봄 과정을 늘봄전담실이 전담하여, 학교와 학교 밖 모든 교육자원을 연결해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2 늘봄과정

늘봄 과정	초1~2 맞춤형	▶ 초 1, 2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으로 편성·운영 (매일 2차시)하는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교육 (기존 방과후학교)	▶ 초 1~6학년 학부모·학생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편성·운영하는 유상 또는 무상 교육 프로그램
	선택형 돌봄 (기존 초등돌봄교실)	▶ 초 1~6학년(초 1~2학년 우선) 대상으로 오후, 틈새, 저녁 시간에 쉼, 놀이를 제공하는 초등 돌봄전담사 등이 운영하는 무상 돌봄 프로그램

3 늘봄학교 참여 방법

- 2월 중 정기 수강 신청
- 추가 신청 및 신청 취소 방법: 방과후 강사님께 직접 연락 (연락처는 학교 홈페이지)

4 선택형 교육 수강료 납부

- 스쿨뱅킹으로 납부 (매월 10일경, 미납 시 수강명단에서 제외됨)

5 선택형 교육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 총 수강 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환불에서 제외한다.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

6 늘봄프로그램 교육 시간표

☎ 문의: 늘봄지원실(070-4351-5342/070-4351-5387(11:30~16:30))

2025학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구분	순	프로그램명 (수업실)	요일	운 영 시 간					대상	수강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정원
				월	화	수	목	금			
맞춤형 프로그램	1	사고력수학 (3층 늘봄1실)	월~금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00-13:40 ②13:50-14:30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00-13:40 ②13:50-14:30	①1학년 ②2학년	무료	각 20 명
	2	악기연주 (4층 음악실)	월~금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00-13:40 ②13:50-14:30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00-13:40 ②13:50-14:30	①1학년 ②2학년	무료	각 15 명
	3	통합체육 월수금 강당 화목:별빛놀이실	월~금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00-13:40 ②13:50-14:30	①13:50-14:30 ②14:40-15:20	①13:00-13:40 ②13:50-14:30	①1학년 ②2학년	무료	각 20 명
	4	위인과 함께 나의 인성만들기 (3층 늘봄2실)	수			①13:00-13:40 ②13:50-14:30			①1학년 ②2학년	무료	20 명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5	주산수리셈 (4층 늘봄7실)	월·수· 금	13:50-14:30 14:40-15:20 15:30-16:10		13:50-14:30 14:40-15:20 15:30-16:10		13:50-14:30 14:40-15:20 15:30-16:10	1~6학 년	32,000 (교재비)	60	
	6	컴퓨터 (별관:컴퓨터실)	월·수· 금	13:50-14:30 14:40-15:20 15:30-16:10		13:50-14:30 14:40-15:20 15:30-16:10		13:50-14:30 14:40-15:20 15:30-16:10	1~6학 년	32,000 (교재비)	60	
	7	종이접기&클레이 (4층 늘봄4실)	월·수· 금	13:50-14:30 14:40-15:20 15:30-16:10		13:50-14:30 14:40-15:20 15:30-16:10		13:50-14:30 14:40-15:20 15:30-16:10	1~6학 년	32,000 (재료비)	60	
	8	방송댄스 (별빛놀이실)	월·수· 금	13:50-14:30 14:40-15:20 15:30-16:10		13:50-14:30 14:40-15:20 15:30-16:10		13:50-14:30 14:40-15:20 15:30-16:10	1~6학 년	32,000	60	
	9	배드민턴 (강당)	화·목 (50분)		13:50-14:40 14:50-15:40 15:50-16:40		13:50-14:40 14:50-15:40 15:50-16:40		13:50-14:40 14:50-15:40	1~6학 년	28,000	60
	10	로봇과학 (4층 늘봄6실)	화·목 (50분)		14:50-15:40 15:50-16:40		14:50-15:40 15:50-16:40		14:50-15:40 15:50-16:40	1~6학 년	28,000 (교구비)	60
	11	미술 (4층 늘봄5실)	화·목 (50분)		13:50-14:40 14:50-15:40		13:50-14:40 14:50-15:40		13:50-14:40 14:50-15:40	1~6학 년	28,000 (재료비)	60
	12	독서논술 (3층 늘봄3실)	화·목 (50분)		13:50-14:40 14:50-15:40 15:50-16:40		13:50-14:40 14:50-15:40 15:50-16:40		13:50-14:40 14:50-15:40 15:50-16:40	1~6학 년	28,000 (교재비)	60

학교폭력 예방

①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례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 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 징후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징후(예시)

가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 절망감(예: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4 학교폭력 신고 방법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신고·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 • (신고함)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 (설문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 전화: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아동학대 예방

②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 례
신체학대	<p>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p>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 왕따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아동 정서 발달,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행위(감금, 약취, 아동노동 착취)
성학대	<p>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	<p>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3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관할 경찰서, 시·도, 시·군·구
 - ※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비공개, 보호조치 가능

● 신고 내용

- 아동의 인적사항
-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등
- 기타 사항: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등)

● 신고 시 주의 사항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 신고 지체 시 아동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아동학대 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
- 학대(의심) 행위자에게 신고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 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 피해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 현장 조사 전에 피해 학생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아동이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1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 2 실천 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실천 방법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주세요.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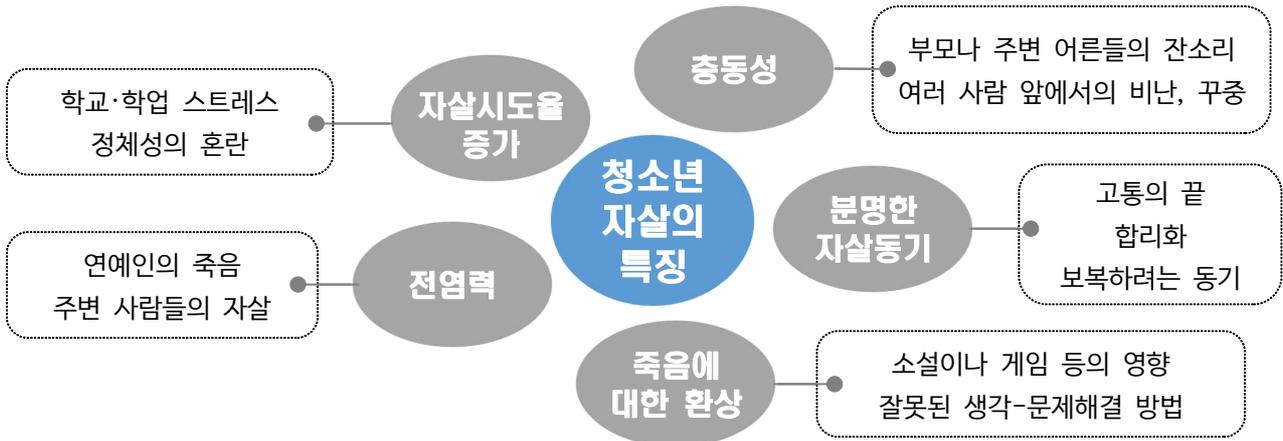
함께 키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③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2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 평소와 달리 숙제를 잘 안 해온다.
- 수업시간에 자주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 무단 지각, 조퇴, 결석이 많다.
-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 표정이 어둡고 울적해 보인다.
- 갑자기 살이 너무 빠져 보이거나 찌 보인다.
-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지 않다.
-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비행 행동을 한다.
- 최근 가정문제(부모 이혼, 사별, 경제적 문제 등) 또는 학교 문제(학교 폭력, 따돌림)를 경험했다.
- 최근 친구, 지인 등의 자살 사망을 경험했다.*
- 일기, 노트, SNS 등에 슬픈(죽음 관련)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 '죽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등 자살과 관련된 말을 한다.*
- 자해,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3개 이상 보이는 경우 담당 교사에게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함.
- *항목은 1개 일지라도 교내 담당 교사에게 연계

생명의 전화
www.lifeline.or.kr
☎ 1588-9191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www.suicideprevention.or.kr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다 들어줄 개」 문자상담
☎ 1661-5004

3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

가. 자살예방 대처방법(가정)

-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방법 등)
- 자살에 대한 생각과 삶을 지속할 이유 등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 논쟁이나 비판이나 충고, 설교, 조언은 하지마세요.
- 부모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나 몸은 자녀를 향해 주세요)
-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세요.
- 자살 이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여러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 곁에 머물러 주세요.(자살은 충동적이므로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세요.(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7계명

- 진심어린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 ■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 학생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학생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의 친구들에게 조력을 구한다.
-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한다.

청소년 도박 예방

④

1 도박의 개념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거는 행동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임들이라도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거는 행동이 합쳐지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도박중독의 위험성

- 도박중독: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 대인관계 갈등, 심리적 문제,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의지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 심리적 의존, 통제력 상실, 내성, 금단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삶 전체가 붕괴될 수 있음

3 청소년의 도박중독 징후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줌
- 스포츠 경기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집안의 물건이나 현금이 없어짐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함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됨
- 자주 용돈이 부족하다고 함

4 도박문제 예방에 도움 되는 영상



5 도박문제 전문 상담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s://www.kcgp.or.kr/>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검사(무료), 전화상담(1336), 문자상담(#1336)

약물 중독 및 흡연 예방

⑤

1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 마약류 사용자의 연령층이 낮아짐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
-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의 증가
 - 마약류를 거래할 때 특정 장소나 사람을 통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SNS로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마약류와 관련된 자극적 용어와 영상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되면서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마약류로 인한 피해 및 범죄 연루 위험성
 - 성장기 청소년들은 마약류에 민감하게 반응해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중독에 이르는 속도도 훨씬 빠름. 청소년기는 또래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범죄 연루 위험성도 높아짐
-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중독은 만성 뇌 질환
 - 중독은 뇌의 변화가 일어난 만성질환으로서 치료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며, 평생의 노력이 필요함

2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 수칙

-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해 보기
- 약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기
-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기

3 마약류 예방 도움 받을 곳

- 상담 및 교육기관: 한국마약퇴치본부 1899-0893
 - 지원 내용: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중독 예방과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재활 및 지원
-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www.schoolhealth.kr>
- 입원, 외래 치료 및 상담기관: 지역사회 내 치료보호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마약범죄 신고기관: 경찰 112, 검찰 1301

4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

- 발암물질과 독성 및 유해물질 포함
 - 담배에는 나프틸아민, 벤젠, 비소, 벤조피렌, 니켈, 크롬, 카드뮴 등과 같은 제1 발암물질을 포함한 69종의 발암 물질과 니코틴, 아세트산, 아세톤 등 7,000여종의 독성 및 유해 물질 포함
- 암 발병률 상승
 - 니코틴에 일찍 노출될수록 그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과 관련된 암 발병률 상승
- 약물 중독 초래
 - 청소년기의 흡연은 다른 약물 사용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른 약물 중독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정신건강 문제
 - 스트레스나 우울, 분노, 좌절 등 부정적 정서 상태일 때 흡연을 통해 일시적 완화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감정조절에 있어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5 간접흡연의 위험성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류연에 포함된 많은 유해 물질 흡입
 -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부류연'에는 흡연자에게 직접 들어가는 '주류연'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뇌졸중 및 동맥경화의 위험성
 -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심장, 혈관계의 기능이 영향을 받아 뇌졸중 및 동맥경화의 위험 증가
-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사망 중 28%가 아이들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는 부모에 의해 '3차 흡연'에 노출된 자녀는 중이염, 기침, 호흡기 증상 등 많은 질병을 일으킴
- 전자담배의 연기도 위험
 - 전자담배 연기는 고농도의 초미세 입자로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을 일으키는 유독성 화합물이 들어있음

6 금연 도움 받을 곳

- 상담 및 교육기관: 금연 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 1544-9030

디지털 성폭력 예방

⑥

1 디지털 성폭력 개념

가. 디지털 성폭력과 성폭력의 개념

- 1) 성폭력: 권력 또는 힘의 우위(물리적, 협박, 위계, 위력 등)를 이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2)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기기(SNS, 카메라,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온라인환경, SNS 등에서의 모든 폭력

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주장적 표현

- 1) 성적 자기 결정권: ‘내 몸의 주인은 나’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모두를 포함
- 2) 자기 주장적 표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

2 디지털 성폭력 유형

가. 오프라인 성폭력: 불법 촬영

- 1) 동의하지 않은 사진 촬영, 소지
- 2)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상대의 요청에도 삭제하지 않음
- 3) 소지한 이미지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
- 4) 개인의 이미지를 강제로 획득

나. 온라인 성폭력: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재유포/제3자 유포

- 1) 온라인상에 개인정보 또는 이미지 유포
- 2) 계속 성적인 사진 전송을 강요

다. 온라인 스토킹: 사이버상 괴롭힘

- 1) 해킹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계정 해킹
- 2) 협박 전화 또는 계속되는 원치 않는 문자

3 디지털 성폭력 특성

가. 가해 행위의 집단성, 시공간 제약 없는 가해: 어디서든 누구든 촬영하고 업로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대다수가 방관자 또는 가담자가 되기 쉬움

나. 빠른 전파성, 피해기록의 연속성: 다양한 플랫폼, 제목 변경, 편집 등으로 유통 범위 무한 확장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음

다. 익명성, 비대면성: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을 약화시켜 명백한 폭력이 놓이처럼 되어 버림

4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 피해인지 → 지지자찾기 → 증거확보 → 증거보존 → 상담신고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 디지털성범죄 유형

- | | |
|--|--|
| <p>① 불법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p> <p>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p> <p>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몰래 찍은 후 온라인 유포) -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협박) -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 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 |
|--|--|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전문 기관 목록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전화 상담)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디지털그루밍 대처방안

-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
-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말하기



1 성인지 감수성

가.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

- 성인지 감수성은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의 의식으로 의식은 인간의 행동과 언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 성평등 지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105위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소극적 의미로는 성 차별이나 성 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에 대한 ‘인지 능력’ 혹은 ‘관심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적극적 의미는 성 차별이나 성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을 포함합니다.

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법

-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성 고정관념을 성찰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일상 속에서 성 불평등 단어의 인식 및 개선 노력을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태도를 갖습니다.
-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성평등 관련 책, 기사, 연수, 대화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합니다.
-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불리하지 않은 지 각 성의 입장에서 함께 판단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합니다.
-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여성 혐오와 차별중심 접근을 극복, 각 성의 입장에서 보는 균형잡힌 시선을 갖는 노력을 합니다.

2 가정에서의 성평등 인식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가 낮은 사람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가 높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라,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 - 집안일과 육아 등에서 남성,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해 다소 둔감, 부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서도 어느 한쪽의 권한을 더 높게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와 육아 등 공동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 요리, 빨래, 청소와 아이 돌보기 등의 활동을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 - 가정 내 성 차이를 인정, 부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서도 평등성을 지향

3 가정에서의 성평등 실천 방법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진로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⑧

1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늘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규제 대상과 범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3 Q&A로 알아보는 공교육정상화법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학기의 단위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에 반드시 제시하고, 반드시 정보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2학년의 교육과정을 1학년으로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학년군 단위로 교육과정이 편성되므로, 학년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한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이 정보공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초6~중1, 중3~고1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전 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늘봄 학교(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 근절

⑨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

3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예: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 (벌칙 등)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4 Q&A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 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소년단체·방과후 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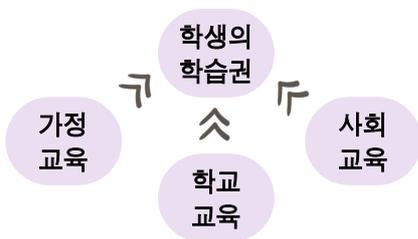
⑩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2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 배움과 실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내면화·인격화하는 과정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지도에 매진할 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 례
공무방해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공립학교의 학부모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닦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업무방해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 사립학교의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위력을 보여 위협하는 경우

유형	사례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촌지를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상해/폭행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가족 등 교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개인의 가정사를 유포하는 경우 •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학생들 간 단톡방에서 교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교사의 얼굴을 촬영·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 및 합성물을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는데 학생이 원격수업 화면에 음란물을 상영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에도 해당됨) • 교사와 상담하던 도중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학생이 교원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낸 뒤, 주소지에서 허락 없이 기다리거나 주소지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교육활동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사의 직무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원하는 특정 문구를 포함하여 변경, 수정 작성하도록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동의 없이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 •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행위 •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학생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폰을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원격수업 중일 때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톡방에 무단 배포한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 | | | |
|------------|--------|-------------------------------|---------------------|
| ① 학교에서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④ 출석정지 |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보호자 함께 참여,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 | |
|------------------|----------------------------------|
|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위 조치 중 ②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는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나 문자, 학교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전 약속을 하고 가급적 근무 시간 중 학교에 방문합니다.
-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한 경우에도 선생님이 수업 중이거나 업무 중일 때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수업 중인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밤늦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 단체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학교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학생 안전교육

11

1 안전교육 7대 영역

○ 교육부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구 분	세 부 내 용
생활안전	시설 안전, 실내활동, 실외활동, 신체활동, 여가 활동안전, 식생활 안전
교통안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선박, 항공, 철도 등)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유괴 및 미아 사고
약물·인터넷 중독	흡연 및 음주, 의약품,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정보 보호 등
재난안전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 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직업안전	실험 및 실습, 특성화고 취업 준비 등
응급처치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 창체 및 교과연계 안전교육: 2025학년도 연간 교과 교육활동에 반영하여 운영

2 등하굣길 안전 생활

○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법

- ① 좁은 길,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추어 좌우를 확인해야 함.
- ② 길을 건널 때는 도로횡단 5원칙을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함.
- ③ 무단 횡단하지 않고, 초록불의 중간에는 건너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림.
- ④ 초록불이 들어오더라도 급하기 뛰어 건너지 않고 좌·우를 살핀 후 길을 건너기.
- ⑤ 차에서 내릴 때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하며, 정차된 차량 앞뒤로 길을 건너지 않기
- ⑥ 비가 오는 날에는 밝은 색 계통의 비옷, 모자, 장화, 우산이 눈에 잘 띄م.
- ⑦ 눈이 오는 날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으며, 목도리·털모자는 넘어졌을 때 충격을 줄여줌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법

- ① 몸에 맞는 자전거 선택: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의미
- ② 안전한 복장 착용: 몸에 붙는 옷, 밝은 색 옷, 운동화 착용(스커트, 펄럭거리는 바지, 슬리퍼, 샌들 금지)
- ③ 보호장구 착용: **안전모(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70% 이상)와 보호장구(팔꿈치·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
- ④ 안전 상태 확인: 타이어의 바람상태 및 브레이크 작동, 체인 등 확인('픽시'의 경우에도 브레이크 달기)
- ⑤ 자전거도 '차':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 준수하기, 반드시 시야가 좋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기
- ⑥ 야간에 라이트 켜기: 라이트를 켜지 않은 자전거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함
- ⑦ 휴대폰/이어폰 자전거 운전 시 사용 금지: 이어폰을 꽂으면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매우 위험함
- ⑧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기: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간
- ⑨ 눈, 비가 오거나 짙은 안개가 낀 날에는 자전거 이용 금지
- ⑩ 자전거 등교 자제 : 오르막길 및 교통사고 위험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제10조, 11조)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제13조, 14조)
 -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금지(제19조)
 -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괴롭힘 등의 금지(제32조)
 -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배리어(Barrier)는 '장애물'이라는 뜻이고 프리(Free)는 '없어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도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노인,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부부,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 다리를 다친 사람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만약 계단 대신 경사로가 있다면 기존에 계단을 잘 이용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계단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3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
-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을 위해 별도로 진행되는 교육이기보다는 교육기관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입니다.

4 통합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증진 • 자신과 다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개발 • 통합교육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힘 • 다양한 요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사회성, 인지, 운동기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 촉진 • 다양한 역할 모델과의 상호작용 • 자아존중감 향상 • 또래들과 우정을 형성할 기회 가짐

- 통합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5 통합교육 Q&A

Q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 되지 않을까요?

- ▶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학생들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비장애학생과 함께 어울려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울 기회는 부족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비장애 학생들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어떻게 지내라고 알려주면 좋을까요?

- ▶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도와주거나 특별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가정에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 만약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자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럴 때 어떻게 적절히 반응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마음입니다.

출결 규정

13

-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
- 결석: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1 출석

- 개별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
-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조퇴·결과의 횟수는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2 결석

가. 출석인정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 법정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나. 질병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① 결석 신고서
②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 3일 이상 결석 → ① 결석 신고서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

다. 미인정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라.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 · 조퇴 · 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출결 관련 각종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학생의 출결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이 필수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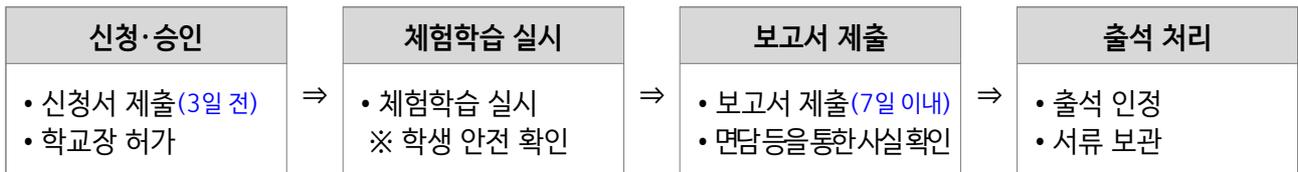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별도로 학교 밖에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

2 운영 내용

- 학습 유형
 -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 출석 인정 기간: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15일 이내**
 - 운영 단위: 1일 단위로 운영,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허가 가능

3 운영 절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 체계 유지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